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4
----------	-----

2022년 12월 21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10.17. 옥재은 의원(대표발의) 외 25명

나. 회부일자 : 2022.10.21.

다. 상정 일자 :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

- 2022년 12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50플러스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, 기존 복지정책실(인생이모작지원과) 및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022.8.19.자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국(평생교육과) 소관으로 변경되었기에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개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33조(상임위원회 소관) 에 ‘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’ 신설(안 제

33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.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병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개정안은 2022.8.19.자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라 50플러스재단의 관리·감독 부서가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해 50플러스재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·감시 기능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임.

2 50플러스재단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(안 제33조제1항)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(2022.8.19.)을 개정해 민선 8기 조직개편을 단행함. 이 중 복지정책실 내 인생이모작 지원과를 폐지하고 해당 사무를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로 이관했으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.

<표-1> 2022.8.19.자 조직개편 내용 일부 발췌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복지정책실에 두는 국·과) ① <u>복지정책실에 복지기획관·복지정책과·지역돌봄복지과·어르신복지과·인생이모작지원과·장애인복지정책과·장애인자립지원과·자활지원과를 둔다.</u>	제12조(복지정책실에 두는 국·과) ① <u>복지정책실에 복지기획관·복지정책과·안심소득추진과·안심돌봄복지과·어르신복지과·장애인복지정책과·장애인자립지원과·자활지원과를 둔다.</u>

현행	개정안
<p>⑦ <u>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
<p><u>제17조의2(평생교육국에 두는 과)</u></p> <p>① <u>평생교육국에 교육정책과·평생교육과·청소년정책과·친환경급식과를 둔다.</u></p> <p>④ <u>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<u>제17조(평생교육국에 두는 과)</u></p> <p>① ----- <u>교육지원정책과·평생교육과·청소년정책과·친환경급식과를 둔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<u>13. 중장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4. 중장년 지원 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5. 중장년층 관련 사회참여,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6. 중장년층 관련 평생교육, 직업교육, 기술교육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7. 중장년층 관련 여가활동, 건강관리 등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

- 개정안은 50플러스재단의 관리·감독부서가 복지정책실(인생이모작지원과)에서 평생교육국(평생교육과)으로 조정됨에 따라 50플러스재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〈표-2〉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 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 다. 1. (생 략) 2. 행정자치위원회 가. ~ 파. (생 략) <u> <신 설></u> 3. ~ 5. (생 략) 6. 보건복지위원회 가. ~ 바. (생 략) <u> 사.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</u> 아. · 자. (생 략) 7. ~ 11. (생 략)	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--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~ 파. (현행과 같음) <u> 하.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<u> <삭 제></u> 아. · 자. (현행과 같음) 7. ~ 11. (현행과 같음)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토 론 요 지 : 생략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옥재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9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옥재은, 경기문, 김규남,
김길영, 김동욱, 김용일,
김원중, 김지향, 김형재,
김혜영, 남창진, 문성호,
민병주, 박철성, 박환희,
송경택, 이민석, 이상욱,
이영실, 이종태, 이효원,
장태용, 채수지, 최민규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- 50플러스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, 기존 복지정책실(인생이모작지원과) 및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022.8.19.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국(평생교육과) 소관으로 변경되었기에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개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33조(상임위원회 소관) 에 ‘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’ 신설(안 제33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사목을 삭제한다.

하.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가. ~ 파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6. 보건복지위원회 가. ~ 바. (생 략)</p> <p> <u>사.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</u></p> <p> 아. · 자. (생 략)</p> <p>7. ~ 11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가. ~ 파. (현행과 같음)</p> <p> <u>하.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 아. · 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